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1996. 01.

건설교통부

※ 본 자료의 페이지 수는 원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수 행 기 관 :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건설부 공고 제 1994 - 38 호 (1994. 2.3)

개정 공고 제 1994 - 278 호 (1994.11.17)

건설교통부 공고 제 1995 - 24 호 (1995. 1.24)

건설교통부 공고 제 1995 - 265 호 (1995. 9.4)

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6 - 20 호 (1996. 1.15)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건설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감리용역대가(이하"대가"라고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회사"라고 한다)가 동법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을 수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감리용역을 외국감리전문회사에 수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추가업무비용,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일급방식"이라 함은 과외업무 및 특별업무에 대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와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자재대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4. "통합감리"라 함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서 2 개소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공사규모, 공사복잡도에 따라 정한 별표 1 의 감리원수에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제경비와 기술료는 제 9 조 및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3. 직접경비는 별표 2 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적용할 수 있다.

4. 추가업무비용은 실비를 산출한다.

제 5 조 (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120 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 분의 5 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별표 3 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제 6 조 (대가조정의 제한)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는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 2 장 감리대가산출방법

제 7 조 (감리원수 적용) 발주청이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별표 1 의 건설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하되 현장 상주 감리원은 별표 3 의 최소배치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년도별 공사비 집행규모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또는 공사휴지기간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배치할 수 있다.

제 8 조 (노임단가) ① 노임단가라 함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상주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등을 포함한 것이며 감리원의 등급별 감리용역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은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각급감리원 배치를 위한 인원수 산정시 감리원의 환산비는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단가는 1 일 8 시간(토요일 4 시간), 1 개월 25 일로 계상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 9 조 (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광열수도비, 사무용품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 10 조 (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감리회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 11 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리원의 현지 근무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현장상주 감리원의 주재비
2. 감리원의 출장여비
3. 보고서 등 인쇄비
4. 현지 차량운행비
5. 현지사무원 급료

제 12 조 (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이라 함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의 과업내용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계상 해야 한다. 단, 4 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등
3. 해외 및 원격지출장여비 및 경비
4. 설계자, 외국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5. 공사발주 설계도서의 검토비용 (신공법, 복합구조물 또는 주요구조물등)

제 13 조 (기준의 해석) 이 기준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건설감리협회의 해석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6.1.1 이후 체결된 계약분중 이고 시행일 당시 당해감리업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2. (감리대가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된 감리용역의 경우는 잔여감리기간 동안 이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전설공사 감리원수

단위 : 인.월

공사비(억원)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36	41	45
70	47	53	58
100	63	70	77
150	85	95	104
200	107	119	130
300	146	163	179
400	182	203	223
500	216	241	265
700	280	312	343
1,000	369	410	451
1,500	504	560	616
2,000	629	699	768

1.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수 적용

2. 2,000 억원 이상일때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감리원수 적용

① 감리원수 = 2.024 X √(0.769)(X : 보통의 공종 공사비)

② 여기서 단순한 공종은 -10%하고 복잡한 공종은 +10%한 감리원수를 적용함

3. 각급 감리원수는 당해 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감리원의 등급별, 배치인원수를 발주청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text{감리원수} = \sum_{i=1}^4 (N_i \times S_i)$$

N_i : 각급 감리원의 수(인·월)

S_i : 각급 감리원의 환산비

4. 비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 비율은 20%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적용할 수 있다.

5. 발주청은 당해 공사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조정 배치할 수 있다.

- ① 전기.통신.계장등 특수분야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계약공사로서 당해공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③ 기타 공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6. 발주청은 통합감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현장별로 산정한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7. 발주청은 공사에정가격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증가배치할 수 있다.
8.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 가. 토목공사
- 나. 건축공사(건축법시행령 별표의 용도분류에 의함)

가. 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조성	-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 도시가로 및 간선국도	- 장대 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 지방도, 농촌도로	- 간선하수구거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 교차로
	- 우수구거	- 600MM이상 하수구거	-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 포장보수	- 400MM이상 상수구거	- 하구언 및 갑문
	- 준설 및 매립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소구경상수및 하수관거
	- 보통조경	- 하수도 및 수로 터널	- 상수, 하수 및 산업폐수 처리장
		- 공동구, 교량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공항 활주로	-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 조경 구조물	- 대형 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나. 건축공사(건축법시행령 별표의 용도분류에 의함)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 창고시설 - 주차장등 자동차 관련시설 - 축사등 동물관련 시설 - 종묘배양시설등 - 식물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 소방서, 우체국등 근린 공공시설 - 종교시설 - 유치원, 노인복지 시설등 노유자시설 - 학교, 교육원등 교육연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도소등 교정 시설 - 판매시설 - 유스호스텔등 청소년 시설 -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관 운동장등 운동시설 - 공연장등 관람집회시설 - 박물관등 전시 시설 - 의료 시설 - 공항, 여객자동차 터미널등 순수시설 - 방송국등 방송·통신시설 - 분뇨·쓰레기처리 시설 - 관광휴게시설중 전망탑

<별표 2> 직접경비 산출방법

가. 주재비 : 상주 직접인건비의 30% 단, 도서지역과 산간벽지내 공사등은 당해 공사여건에 따라 할증할 수 있음

나. 출장여비 :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다. 차량비

1) 차량대수

구분	단위	규격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적용대		승용차 혹은 쪼차	1	2이상

2) 산정방법

· 차량비 계상의 구성요소는 손료.재료비로 한다.

· 차량적용에서 승용차는 배기량 1500cc 이하, 쪼차는 배기량 2238cc 이하로 하고 도로신설, 산악, 습지등 험한 지역의 공사는 쪼차 적용

3) 손료 및 재료비

구분	산정일수	시간당손료계수 (상각비.정비비.관리비)	주연료	잡 품
승용차	25일/월	$1,706 \times 10^{-7}$	휘발유 10 l / 일	주연료비의 10%
쪼 차	25일/월	$1,476 \times 10^{-7}$	경유 10 l / 일	주연료비의 10%

라. 현지 사무인원

구분	단위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비 고
보통인부	인	1	2인 이상	· 월25일 기준 · 상여금 400% · 퇴직적립금 100%적용

마. 도서인쇄비

각종보고서(월간보고서, 최종보고서, 특별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설계변경도서등의 횟수, 면수, 부수등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별표 3> 감리원 최소배치기준

구 분	최소배치 기준	비 고
단순공종인 경우	현장상주 3인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2인
단순공종이외의 경우	현장상주 5인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4인

부 록

부록 1

'96 년도 감리원 등급별 임금표

금액단위 : 원

구 분	일임금액	월임금액	환산비(Si)	비 고
특급감리원	132,791	3,319,775	1.293	
고급감리원	102,714	2,567,850	1.000	
중급감리원	84,115	2,102,875	0.819	
초급감리원	63,855	1,596,375	0.622	

※ 본 임금표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임.

© 공표일 : 1995. 12. 23.

부록 2

감리대가 및 감리원 배치 산출 방법

총공사비 200억원, 보통의 공종, 총감리원수 119 인·월, 감리계약기간 22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임.

1. 직접인건비 : 119 인·월 × 2,567,850 = 305,574,150 원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115%)>

305,574,150 × 115 % = 351,410,273 원

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30%)>

$$(305,574,150 + 351,410,273) \times 30\% = 197,095,327 \text{ 원}$$

4. 직접경비 = 129,043,141 원

· 주재비 : 상주직접인건비의 30%

$$305,574,150 \times 80\% \times 30\% = 73,337,796 \text{ 원}$$

· 출장비 : 비상주직접인건비의 10%

$$305,574,150 \times 20\% \times 10\% = 6,111,483 \text{ 원}$$

· 현지차량운행비(승용차 엑센트 1.5CS 적용)

8,752,040 원

- 손료 : $6,630,000 \times 1,706 \times 10^{-7} = 1,131.1 \text{ 원/hr}$

$$1,131.1 \times 8\text{hr} \times 25 \text{ 일} = 226,220 \text{ 원}$$

- 재료비 : 주원료(휘발유) : $624 \times 10\text{원/일} \times 25 \text{ 일} =$

156,000 원

잡품(10%) : $156,000 \times 10\% =$

15,600 원

소계 : $398,820 \times 22 \text{ 개월} = 8,752,040 \text{ 원}$

· 현지사무원 급료

- 보통인부 1인 적용:

$$[31,866 \times \frac{16}{12} \times 25\text{일}] + [31,866 \times \frac{16}{12} \times 0.1 \times 25\text{일}] =$$

1,168,420원

1,168,420 × 22 개월 = 25,705,240 원

· 도서인쇄비 : 15,136,582 원

- 분기보고서(22 개월 ÷ 3 ≒ 7 회)

- 최종보고서(1 회)

- 유지관리지침서(1 회)

- 특별보고서(3 회)

5. 총감리대가 : 983,122,891 원

6. 감리원 배치산출방법

· 비상주(119 인 · 월 × 20%) : 24 인 · 월

- 공사성질에 따라 비상주감리원 결정

· 현장상주(119 인 · 월 × 80%) : 95 인 · 월

· 각급 감리원수 산정방법

$$\text{감리원수} = \sum_{n=1} (N_i \times S_i)$$

N_i : 각급감리원의 수(인 · 월)

S_i : 각급감리원의 환산비

- 특급감리원 (1 인) : 22 월 × 1.293 = 28.446(인 · 월)

- 고급감리원 (1 인) : 20 월 × 1.000 = 20.000

- 중급감리원 (1 인) : 20 월 × 0.819 = 16.380

(1 인) : 12 월 × 0.819 = 9.828

- 초급감리원 (1 인) : 22 월 × 0.622 = 13.684

(1 인) : 11 월 × 0.622 = 6.842

계 95.180 ≒ 95

· 감리원 배치계획

구 분	근 무 기 간				비 고
특급감리원				(2)	22개월
고급감리원	(3)			(2)	20개월
중급감리원	(3)			(2)	32개월
	(1)		(1)		
초급감리원				(2)	33개월
		(1)			
공사기간 (월)	5	10	15	20	

부록 3

감리원수 산출방법 1.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경우(직선보간법에 의함)

· 공사비가 250 억원일때

200 억원 : 119 인 · 월(감리대가기준 『별표 1』 에서)

300 억원 : 163 인 · 월(감리대가기준 『별표 1』 에서)

$(163 \text{ 인} \cdot \text{월} - 119 \text{ 인} \cdot \text{월}) \div 100 \text{ 억원} = 0.44 \text{ 인} \cdot \text{월}$

$0.44 \text{ 인} \cdot \text{월} \times 50 \text{ 억원} = 22 \text{ 인} \cdot \text{월}$

$119 \text{ 인} \cdot \text{월} + 22 \text{ 인} \cdot \text{월} = 141 \text{ 인} \cdot \text{월}$

2. 공사비가 2,000 억원 이상일 경우(계산식에 의함)

· 공사비가 3,000 억원 일때

감리원수 = $2.024 \times X^{0.769}$

$= 2.024 \times 3,000^{0.769} = 955.2 \text{ 인} \cdot \text{월}$

※ 여기서 X는 보통공사 기준의 억원단위 공사비 이므로 단순한 공종은 10% 하향조정하고 복잡한 공종은 10%를 상향조정한 인원수를 적용함.

부록 4

감리대가 기준적용에 따른 참고사항 1.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최소한의 관리에 필요한 감리요원을 투입해야하고, 공사중단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라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2. 감리대가의 기준에서 제경비는 감리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비용(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이 포함된 것임.

3.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 일 8 시간, 1 개월 25 일을 기준으로 한것이어서 연장, 야간, 휴일 등의 근무가 공사추진상 필요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고,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 하여야 한다. 이때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현지차량운행에 따른 보험료, 세금등의 직접경비는 제경비에 포함된것임.

5. 감리원 배치계획에서 비상주감리원은 각 분야별 참여자의 명단만 제출토록 함.

부록 5

질의회신 사례 1. 감리기간의 정의 및 감리원 중복 배치

<질의요지>

가. 감리원 배치기간은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인지, 또는 실제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인지 여부?

나. 철수기간 중 당해 감리원을 다른 현장에 배치할 경우 중복배치로 인정하는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가"항에 대하여

감리기간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하지만 감리원 배치기간은 각 담당 업무별로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말하며

"나"항에 대하여

감리원배치 계획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당해 현장에서 철수하여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는 중복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건관 58825-750 : '95.7.5>

2. 감리원의 초과, 야간, 휴일근무 대가산정

<질의요지>

감리원이 초과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시 감리대가 적용기준은?

<질의자 :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신내용>

초과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가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6 조를 적용하고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라면 감리대가 기준을 적용하되 직접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하고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는 할증 되지 않는 직접인건비를 적용하여 산출함.

<건관 58824-1370 : '95.12.18>

3. 감리원의 휴가시 대가지급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시 감리대가의 지급여부 및 감리조치 사항은?

<질의자 : (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

<회신내용>

감리업무수행기간중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48 조에 의거 연간 유급휴가일수 이내일 경우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건관 58825-974 : '95.8.24>

4.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대가지급

<질의요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감리용역기간도 연장된 경우 감리대가 증액 조정 가능여부?

<질의자 : (주)삼환엔지니어링>

<회신내용>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용역 기간이 연장된 경우 감리대가의 지급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발주청의 승인하에 감리원을 투입하여 건설공사 연장시까지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이에 상응하는 감리대가는 지급되어야 할 것임.

<기술 4650-390 : '95.12.14>

5.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대가조정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고급감리원에만 기준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각등급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주) 유신설계공단>

<회신내용>

감리원 등급별 노임은 감리용역계약시 제출한 감리원 투입계획에 의하여 잔여 감리기간동안 각 등급별로 노임단가 상승비율을 적용계상함.

<기술 4650-339 : '95.11.21>

6.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감리비 지급주체

<질의요지>

예상준공기한보다 공사가 연기되어 이에 따른 감리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을 경우 감리비 지급주체는?

<질의자 : (주) 삼안건설기술공사>

<회신내용>

공사가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연장될 경우에 대한 감리용역비 지급주체는 감리용역계약조건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건설기술관리법 제 27 조의 2 에 따라 감리용역 발주청이 적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술 4650-311 : '95.11.10>

7. 비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

<질의요지>

비상주감리원 한 사람이 2 개소에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비상주감리원은 기성·준공검사 및 현장의 문제점등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하는 업무로서 당해사업 이외의 다른 감리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동일기간내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는 배치될 수 없음.

<건감 58825-515 : '95.7.5>

8. 공정부진시 감리기성 산출방법

<질의요지>

가. 공정계획상 전체공정의 12%가 진행되어야 하나 공사부진으로 1%정도 진행되어 있으며 책임감리는 출근(상주)일을 근거로 하여 감리기성대가(계약금의 26%)를 청구하였을 경우 청구금액을 다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공사부진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책임감리자의 기성금이 공기연장된 기간까지 증액되는 경우 감리기성대는 시공사, 감리자, 발주청 중 어디에서 지불하여야 하는지와 책임이 있는지 여부?

<질의자 : 노원구청장>

<회신내용>

"가"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청 승인하에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 감리전문회사는 공정의 부진에 관계없이 감리용역계약서 내용에 따라 적정한 감리용역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항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공사가 시공부진으로 감리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청과 감리자가 협의, 감리기간을 연장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발주청은 적정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부진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기술 4860-008 : '96.1.10>

9. 직접경비(현지차량운행비) 지급 기준

<질의요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 11 조(직접경비) 제 4 호의 현지차량운행비 지급에 있어 법인소유차량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차량을 임대하여서는 사용 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자 : (주)평진건축감리공단>

<회신내용>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상 현지차량운행비는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차량소유주에 관계없이 실지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 운행이 되고 있다면 발주청에서는 차량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에게 차량비를 지불하는 방법은 당사자간의 고용계약 등에 의해 처리할 사항임.

<건관 58825-507 : '95.5.9>